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489-14

국회입법조사처

NARS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23호 2016. 9. 28.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Vol. 23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임언선(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2016. 9. 2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5. 1.
초고 작성기간	2016. 5. 1. ~ 2015. 9. 6.
초안 검토	재정경제팀 김대은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2시 – 실무위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김대은, 임동춘, 김봉주, 이수기 팀장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6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 심의관

발 간 사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또는 수년간에 걸친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수행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여 정부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언급된 사항들 중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선노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성 호

요 약

□ 2015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채택하였음

○ 동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배경은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임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질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답변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 국세청은 2016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으며,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5개 추가하여 총 52개로 확대하였으며,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음

○ 국세청은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 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

○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며, 금융추적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에 대한 2015년 시정 및 처리결과의 내용도 2014년과 비교할 때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제시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재하는 방안이 아니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와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하고,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소득탈루율)과 탈세는 증가하는 추세임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 연간 200만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탈세는 조직적 · 의도적인 경우가 많으며, 탈세 수법도 다양화 · 정교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전담 관리조직을 편성하여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적출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업종별 소득탈루 현황을 집중 파악하여 공개함으로써 탈세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평가받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국세통계연보』 등에 연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차 례

□ 요 약

Ⅰ. 평가 배경 / 1

1. 배경 ····· 1

2. 관련 법령 및 제도 ····· 5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 9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9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12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14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14

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대 시행 ····· 14

1) 전자(세금)계산서 ····· 14

2) 현금영수증 ····· 15

나.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19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1

가. 국세청의 시정・처리결과의 반복 ····· 21

나.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대 시행 ····· 22

1) 전자(세금)계산서 ····· 22

2) 현금영수증 ····· 23

다.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24

Ⅳ. 개선방향 / 28

1. 과세인프라 점검 및 제재 규정 강화 ····· 28

2. 효과적인 세무조사 확대와 사후 검증 강화 ····· 29

3.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 관련 통계자료 공개 필요 ····· 31

□ 참고문헌

□ 부록

1. 2014년 및 2015년 국세청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34

표 차 례

[표 1]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 3
[표 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9
[표 3]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 11
[표 4]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13
[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15
[표 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연혁 ····· 16
[표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 17
[표 8]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18
[표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 18
[표 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과태료 부과 현황 ····· 19
[표 11]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 20
[표 12]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 ····· 21
[표 13]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 23
[표 1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 ····· 24
[표 15]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 25
[표 16]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 26
[표 17]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 27
[표 18] 사후검증 추징세액 ····· 30

Ⅰ. 평가 배경

1. 배경

□ 탈세는 세수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탈세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1)]에 대한 세무조사를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제도개편[2)]을 통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사업소득파악률[3)], 근로소득파악률[4)] 등 각종 지표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파악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5)]

---

1)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가들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도소매업자,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기타업종(전문직 · 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등이 포함됨. 이 보고서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한 부분을 지칭함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제도 도입(2000) 및 확대(2009),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제도 도입(2010) 및 확대(2013)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또한 장부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7년 사업용 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용 계좌 미개설 또는 미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2013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 조사역량을 집중한 바 있음(국세청, 2013.5.29. 보도자료)

3) 사업소득파악률=국세통계의 사업・부동산 소득/국민계정의 개인영업잉여

4) 근로소득파악률=국세통계의 근로소득 총급여/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임금 및 급여)

5)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계정상의 소득통계와 국세통계를 비교해 볼 때, 사업소득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증가하였고, 근로소득파악률은

□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표 1] 참고)

○ 소득적출률[6]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3.0%까지 증가함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7]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에 총 6,05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음

-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960명)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 5,585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1조 1,741억원의 새로운 소득을 밝혀냈으며(적출 소득), 이에 새로 부과된 세액이 6,059억원에 달했음

- 2015년 소득적출률은 43.0%이며, 이는 소득의 43.0%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의미임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총 17차례의 세무조사 동안, 조사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총 6,947명의 소득적출률은 49.1%에 달했으며, 부과된 세액도

2011년 99.5%로 실제소득의 대부분이 과세당국에 신고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과세대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중은 2008년 57.0%를 달성한 이후 2011년에는 63.9%까지 증가하는 등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종합소득세 총 납세인원대비 과세대상자의 비중도 1995년 38.1%에서 2000년 43.9%로 상승한 이후, 2005년까지 44% 내외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57.0%, 2011년 58.6%로 빠르게 상승하였음

6) 소득적출률은 소득탈루율을 의미함. 즉,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임

7) 국세청은 동 조사결과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4조 671억원이었음

[표 1]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단위: 건, 억원, %)

구 분	착수일	인 원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부과세액	소득적출률 (③/①)
1차	’05.12.22	422	5,302	2,286	3,016	1,094	56.9
2차	’06.03.20	319	5,516	2,331	3,185	1,065	57.7
3차	’06.08.16	362	15,459	7,932	7,527	2,454	48.7
4차	’06.11.06	312	10,911	5,777	5,134	2,096	47.1
5차	’07.02.26	315	11,048	5,795	5,253	2,147	47.5
6차	’07.06.21	259	7,865	4,230	3,635	1,581	46.2
7차	’08.01.10	199	6,688	3,671	3,017	1,271	45.1
8차	’08.08.21	136	4,075	2,257	1,818	843	44.6
9차	’08.11.28	147	2,874	1,630	1,244	905	43.3
10차	’09.05.06	130	5,160	3,048	2,112	883	40.9
11차	’09.09.25	150	2,751	1,894	857	378	31.2
2010년	상시	451	10,285	6,267	4,018	2,030	39.1
2011년	상시	596	20,431	12,764	7,667	3,632	37.5
2012년	상시	598	17,967	10,889	7,078	3,709	39.4
2013년	상시	721	20,833	11,047	9,786	5,071	47.0
2014년	상시	870	23,347	13,296	10,051	5,413	43.1
2015년	상시	960	27,326	15,585	11,741	6,059	43.0
계		**6,947**	**197,838**	**123,995**	**97,190**	**40,671**	**49.1**

자료: 국세청 자료

□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기획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적출률은 2013년 47%를 정점으로 43%대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15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관련 법령 및 제도

□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 포탈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융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있음

□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6.3.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8]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등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9] 등을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8) FIU란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말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탈세 및 탈루소득을 추적하고 있음

9) 특정금융거래정보란 고액현금거래정보(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와 의심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포함함. 고액현금거래정보란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심거래정보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2016.3.3.>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 9월 10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10)]

○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이는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임

[표 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세청	○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12.

○ 동 사안은 2014년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유사한 내용

10) 2015년 9월 11일 실시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 국세청, 9월 21일의 광주지방 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9월 22일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으로, 201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주제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노출도 제고 및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감시 강화”이고, 세부 요구사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노출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소득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었음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015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음([표 3] 참고)

○ 2014년도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3.1%로 2010년 대비 4.0%p 증가하였고,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도 2014년 소득적출률이 32.9%로 2010년 대비 4.8%p 증가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범위 및 관리 대상 강화, 처벌수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층의 탈세 방지를 위해 각종 증빙분석 자료의 신고 전 제공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자와 대재산가의 탈세를 철저히 막고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이 더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피감사기관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국세청	2015년 9월 10일 국세청회의실 ○○○위원, ○○○위원, ○○○위원	- '14년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3.1%로 '10년 대비 4%p 증가하였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도 '14년 소득적출률이 32.9%로 '10년 대비 4.8%p 증가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범위 및 관리 대상 강화, 처벌수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 -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매우 높아 아직도 지하경제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각종 증빙분석 자료의 신고 전 제공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2015년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 ○○○위원, ○○○위원, ○○○위원	-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현금업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필요 -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한도액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
광주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2015년 9월 21일 광주지방국세청 회의실 ○○○위원	- 고소득자와 대재산가의 탈세를 철저히 막고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이 더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대구지방국세청	2015년 9월 21일 대구지방국세청 회의실 ○○○위원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국세청	2015년 9월 22일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 ○○○위원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징수 실적이 감소함

자료: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9.10.~10.6.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표 4] 참고)

○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 고질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

○ 현재 실시 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금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금융추적조사, FIU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표 4]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ㅇ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를 '15. 7월부터 법인 전체사업자와 3억원 이상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16. 1월부터는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까지 확대하였으며, - '15. 6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자동차수리업 등 5개 업종을 추가, 47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고질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ㅇ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 □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금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급의무를 확대할 계획임 ㅇ '16. 7월부터 「가구·안경 소매, 의료용 기구, 전기용품, 건설자재」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ㅇ 금융추적조사, FIU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기획재정부 등 소관)』, 2016.4.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대 시행

1)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을 전자(세금)계산서[11] 발급의무자[12]로 확대・시행하고 있음[1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총액은 2014년 2,774조 8,227억원에서 2015년 2,781조 4,85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액도 2014년 245조 9,650억원에서 2015년 249조 2,74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11)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3.4.1.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었으며,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자의 '발급여건, 납세편의,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됨

12)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규정하였고, 2016.1.1.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13)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 2016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확대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기		2기		합 계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2011년	11,799,097	1,015,020	11,614,990	1,096,621	23,414,087	2,111,641
2012년	13,211,911	1,146,700	13,272,326	1,164,326	26,484,237	2,311,026
2013년	13,243,318	1,160,249	13,793,954	1,220,762	27,037,272	2,381,011
2014년	13,585,216	1,198,393	14,163,011	1,261,257	27,748,227	2,459,650
2015년	13,593,517	1,210,153	14,221,337	1,282,596	27,814,854	2,492,749

주: 해당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2)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를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초기에는 전문직·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게 하였음

○ 이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 국세청은 2016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금영

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52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함[14)]

○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표 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10.4.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30만원,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14.1.1	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 의무
’14.7.1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14)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표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행일	구 분	업 종	발급의무 시작일
’10.1.1	30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4.1
’10.6.8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7.1
’13.10.1	10개 업종 추가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1.1
’14.2.21	1개 업종 삭제	· 도선사업	
’15.2.3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6.2
’16.2.17	5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7.1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시 4억 4,900만여 건에서 증가하여 2012년 52억 5,700만여 건을 정점을 기록하였고, 2015년 50억 4,500만여 건을 발급함[15)]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14년 91조 9,465억원에서 2015년 96조 5,46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이 5개 업종이 추가되어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되면서 향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15)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표 8]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 수	449	738	1,489	2,890	4,442	4,952	5,187	5,257	5,227	5,193	5,045
금 액	185,599	306,266	502,562	615,559	686,984	759,565	808,901	823,890	855,152	919,465	965,463

주:해당연도 총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시 931,942명으로 가입비율은 76.4%에서 2014년 1,392,24명으로 가입비율 98.8%, 2015년 1,484,563명으로 가입비율 98.6%로 거의 모든 가입지정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가입자수	가입지정자			가입의무 외 가입자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비율	
2005년	1,144,193	1,219,345	931,942	76.4	212,251
2006년	1,401,111	651,115	584,541	84.2	855,570
2007년	1,725,485	821,492	810,983	98.7	914,502
2008년	1,918,681	880,298	860,906	97.8	1,057,775
2009년	2,118,586	966,983	948,091	98.0	1,170,495
2010년	2,290,230	1,010,172	996,589	98.7	1,293,641
2011년	2,397,840	1,055,048	1,041,436	98.7	1,356,404
2012년	2,464,874	1,124,314	1,107,823	98.5	1,357,051
2013년	2,702,929	1,570,860	1,548,908	98.6	1,154,021
2014년	2,827,007	1,452,242	1,434,783	98.8	1,392,224
2015년	2,931,193	1,505,622	1,484,563	98.6	1,446,630

주: 1)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연도 12.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2) 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임(2005년은 신용카드가맹점 전체를 가입지정자에 포함하였음)
3) 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914건에 94억 3,700만원에서 2015년 4,903건에 80억 1,200만원으로 미발급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연 도	건 수	금 액
2011년	486	5억 8,100만원
2012년	810	7억 3,900만원
2013년	674	8억 7,900만원
2014년	3,914	94억 3,700만원
2015년	4,903	80억 1,200만원

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자료: 국세청 자료

나.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은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통해 고질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 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함

○ 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에 탈세제보자료 19,442건을 처리하여 1조 5,301억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2015년에는

19,895건의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하여 1조 6,530억원을 추가 징수하였음[16)]

- 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 처리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268건 증가하였으며, 추가징수세액도 1,22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추가징수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2010년	10,559	1,613	8,946	9,021	4,779	1,538
2011년	10,744	1,538	9,206	9,036	4,812	1,708
2012년	12,795	1,708	11,087	10,699	5,224	2,096
2013년	20,866	2,096	18,770	17,036	13,211	3,830
2014년	23,272	3,830	19,442	18,627	15,301	4,645
2015년	25,733	4,645	21,088	19,895	16,530	5,83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수보(접수)건수 1,222건 중 481건을 조사하여 3,030억원을 추징하였으며, 2015년에는 수보건수 1,017건 중 375건을 조사하여 2,756억원을 추징하였음

-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06건 감소하였고, 추징세액도 27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6) 탈세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표 12]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수보건수	조사건수	추징세액	건당추징세액
2011년	631	365	3,009	8.0
2012년	981	351	2,835	8.1
2013년	1,145	555	3,671	6.6
2014년	1,222	481	3,030	6.3
2015년	1,017	375	2,756	7.3

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서 FIU로부터 연간 수보한 의심거래정보 건수를 사용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국세청의 시정·처리결과의 반복

□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에 대한 2015년 시정 및 처리결과의 내용도 2014년과 비교할 때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부록 1] 참고)

○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노출도 제고 및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감시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은 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노출도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②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③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2015년의 시정·처

리결과는 2014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특히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제시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재하는 방안이 아니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분류(소득적출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통계 그리고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 등을 정리하여 『국세통계연보』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대 시행

1)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를 확대하고,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인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세금추적의 근원을 차단하는 등 탈세의 방법이 지능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재의 가산세율만으로는 탈세를 방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현금영수증

□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 그리고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17)]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13]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구 분	미발급 거래금액	포상금지급금액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 250만원 이하	미발급 거래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주: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고시」 제2015-34호

17) 세파라치 제도라고도 하며,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하여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4년 6,296건(30억 2,900만원)에서 2015년 9,651건(19억 8,700만원)으로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특히 2015년에는 신고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포상금 지급한도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2015년에는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8)]

[표 1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미발급 신고건수(건)	2,122	6,296	9,651
미발급 신고포상금(백만원)	271	3,029	1,987

주: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2015년 포상금 지급액은 감소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다.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은 고질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함[19)]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실적[20)]을 살펴보면, 2014년 4,264명을 조사하여 9,536억원을 추가 부과하였으며, 2015년 4,108명을 조사하여 9,091억원을 추가 부과하였음

○ 매년 확정신고인원의 1%정도를 조사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조사대

18) 2014년 포상금 지급한도가 거래 건당 1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 연간 500만원 이내로 지급하였음

19)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 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함

20)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의 1% 정도를 조사함

상 인원이 1%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엄정한 세무조사 측면에서 적정 조사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5]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단위: 명, 억원)

구 분	확정신고인원	조사인원	결정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부과금액
2010년	3,570,816	3,624	121,757	13,662	20,632	2,175
2011년	3,785,248	3,669	156,980	14,119	22,379	7,175
2012년	3,956,702	4,563	128,046	14,474	25,504	8,571
2013년	4,352,929	4,392	162,798	17,944	28,473	10,068
2014년	4,564,682	4,264	167,880	17,575	28,591	9,536
2015년	5,052,552	4,108	168,770	16,545	25,718	9,091

주: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인원을 말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국세청에 의하면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의 43.0%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전문직도 소득의 25.1%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21)]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인원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득적출률이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과세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2)]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2014년 870명에서 2015

21)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탈루위험이 매우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일반적인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22)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징수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부과기간 내에 징수된 세액만을 계산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년 96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6]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명, 억원, %)

연도별	인 원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소득적출률 (③/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0	451	10,285	6,267	4,018	39.1	2,030	1,848	91.0
2011	596	20,431	12,764	7,667	37.5	3,632	3,001	82.6
2012	598	17,967	10,889	7,078	39.4	3,709	2,903	78.3
2013	721	20,833	11,047	9,786	47.0*	5,071	3,641	71.8
2014	870	23,347	13,296	10,051	43.1	5,413	4,178	77.2
2015	960	27,326	15,585	11,741	43.0	6,059	3,973	65.6

주: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 + 적출소득)
* : 일부 고액추징 건을 제외하면 소득적출률은 44.1%임
자료: 국세청 자료

○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소득적출률이 2010년 28.1%에서 2012년 39.8%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 32.9%를 기록하였으나, 소득적출률은 3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15년 소득적출률이 25.1%까지 감소한 이유는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병·의원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의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감소하게 됨

[표 17]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단위: 명, 억원, %)

연도별	인 원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소득적출률 (③/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0	249	6,068	4,364	1,704	28.1	850	832	97.9
2011	204	6,577	4,590	1,987	30.2	974	933	95.8
2012	230	6,332	4,448	1,884	39.8	982	932	94.9
2013	288	8,361	5,616	2,745	32.8	1,447	1,186	82.0
2014	270	7,943	5,327	2,616	32.9	1,232	986	80.0
2015	209	5,979	4,480	1,499	25.1	751	651	86.7

주: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함.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음(2015.6월)

자료: 국세청 자료

□ 국세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감소시키고 징수세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조사 및 징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개선방향

1. 과세인프라 점검 및 제재 규정 강화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득적출률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한 과태료[23]를 현재 5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빈번한 업종 및 업소에 대하여는 엄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성실신고확인제도[24]를 통하여 세무사와 국세청이 상호 협조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세무신고와 사후 검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23)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24)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치하고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가 확대됨에 따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1인당 한도액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25)]

○ 정부는 세파라치 제도로 인한 과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포상금의 연간 한도와 건당 한도를 축소하였으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2016년 이후 2~3년 동안 신고건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수준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효과적인 세무조사 확대와 사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조직적·의도적인 경우가 많으며, 탈세 수법도 다양화·정교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전담 관리조직을 편성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26)]

2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건당 한도가 지난 2014년 6월까지는 300만원이었지만 2016년부터 5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연간 한도는 지난 2014년 6월까지 1,500만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200만원으로 수정되었음

26) 배종학(2005),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9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8., p. 25.

- 특히 국세청이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후검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는 2011년 861억원에서 2014년 3,007억원으로, 종합소득세는 2011년 248억원에서 2014년 1,010억원으로 추징세액이 증가했음
-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하여 사전안내를 한 이후 시정이 안되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후검증을 하여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18] 사후검증 추징세액

(단위: 억원)

연 도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추징세액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추징세액
2011년	861	248
2012년	1,394	439
2013년	2,570	1,109
2014년	3,007	1,010

자료: 국세청 자료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적출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하여 업종별 소득탈루 현황을 집중 파악하여 공개함으로써 탈세를 예방하는 방안이 제기됨[27)]

○ 국세청은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세무조사 대상인원 수와 징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7) 배종학(2005), p. 26.

3.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 관련 통계자료 공개 필요

□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등이 증가하는 등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평가받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국세통계연보』 등에 연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로 인한 세무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직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개인사업자와 더불어 그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및 징수세액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_____,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각연도

_____,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보도자료, 2016.6.16.

_____,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2016.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12.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국세청』,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9.15.

_____,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9.21.

_____,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10.6.

_____,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대구지방국세청』,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9.21.

_____,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9.22.

_____, 『201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회회의록 제337회 국정감사, 2015.9.11.

김현숙,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12.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기획재정부 등 소관)』, 2016.4.

박명호,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이 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3.

_____,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추이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1.

배종학,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9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8.

신영임 · 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연구보고서 제18호, 국회예산정책처, 2014.2.

현진권 · 김용대,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부록 1] 2014년 및 2015년 국세청의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구 분	시정・처리요구상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15년	○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ㅇ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를 '15. 7월부터 법인 전체사업자와 3억원 이상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16. 1월부터는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까지 확대하였으며, - '15. 6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을 추가, 47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고질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ㅇ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 □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금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급의무를 확대할 계획임 ㅇ '16. 7월부터 「가구·안경 소매, 의료용 기구, 전기용품, 건설자재」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ㅇ 금융추적조사, FIU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2014년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노출도 제고 및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감시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노출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소득 탈세에 대한 감시 강화할 것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노출도 제고 ㅇ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 '14.1월부터 귀금속 소매, 웨딩관련업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33개→43개)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고, '14.7월부터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 시행하고 있음 - '15.6월부터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시행할 예정임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ㅇ 탈세제보 · FIU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지속 실시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ㅇ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위주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 ·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각연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2016.9.7.	김여라
제2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2016.9.7.	정준화 송시현
제3호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6.9.7.	정도영
제4호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2016.9.7.	조규범
제5호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2016.9.7.	심우민
제6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6.9.8.	최병근
제7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2016.9.8.	이동영
제8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2016.9.8.	조숙희
제9호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9.8.	배재현
제10호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2016.9.8.	조주은
제11호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016.9.12.	조인식
제12호	지방공기업 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2016.9.12.	류영아
제13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2016.9.12.	이승열
제14호	재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	2016.9.12.	김종갑 임채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2016.9.12.	전형진
제16호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6.9.22.	강지원
제17호	건강영향조사의 개선 방안	2016.9.22.	이혜경
제18호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현황과 개선방향	2016.9.22.	장영주
제19호	정부의 소득분배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6.9.22.	김민창
제20호	낙도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2016.9.22.	강재구
제21호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2016.9.22.	정미야
제22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2016.9.28.	정재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23호

발 간 일	2016년 9월 28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7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489-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ISSN 2508-4240

NARS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내역을
점검·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국정감사 이전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